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685호
- 발 의 자 : 김창원 · 최영주 · 노승재 의원(찬성자 9명)
- 발의일자 : 2019년 5월 24일
-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 2. 제안이유

- 국제회의와 전시, 관광활동 등을 통칭한 컨벤션(Conven)산업에서 2000년대부터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통칭하는 마이스(MICE)산업이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마이스산업은 지역 내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호텔, 교통, 건설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크며 관광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서울은 한정된 기반시설(SETEC, Coex, aT Center)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회의 개최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마이스 유치 촉진 및 개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마이스산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서울시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법과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와 마이스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마이스 개최와 마이스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첨부)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5.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 개요

- 동 제정안은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 유치 촉진 및 개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2019~2023)에서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여 ‘MICE도시 도약’과 ‘융복합 관광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서울의 MICE 산업은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에 비해 시설규모가 10%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국제회의 지원에 국한되어 MICE 종합육성에 한계가 있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마이스 관련 사업의 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한 조례임.

## 나. 조례안 체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마이스 유치 촉진 및 개최 지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제2장 마이스산업 육성(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제3장 서울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안 제15조부터 제19조) 및 4개의 부칙을 규정함.
-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목적)부터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까지 구성되어 있고,

안 제1조(목적)은 동 조례의 목적을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하고 있음.

안 제2조 (정의)에서 마이스산업, 마이스전담조직을 규정하고 있음. 마이스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전에는 국제회의와 전시,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상거래, 관광활동 등을 통칭하여 컨벤션 산업이라 불렀음.

관광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컨벤션산업은 국제회의의 유치, 기획, 실행 과정에서 국제회의와 연관된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의 총체적인 활동으로 관광산업이 내포하는 여러 분야의 집약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산업과 연계발전할 수 있는 종합산업으로 여겨져 옴.

2000년대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을 포괄하여 MICE 산업으로 통칭하며 정책적으로 육성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이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MICE 개념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

동 조례의 마이스 전담조직 정의에서 “관광,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명확하게 설명될 것으로 판단됨.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마이스 전담조직”이란 관광,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u>설립·운영되는 곳으로 시가 투자 또는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u>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마이스 전담조직”이란 관광,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u>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u>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마이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MICE 참가자는 규모가 몇 백 명에서 수 천 명 이상의 규모가 보통이며, 대규모 행사의 경우 수만 명 이상이 참가하기 때문에 MICE 행사 유치는 대량 관광객의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로 시설확

층에 대한 노력이 시급한 바 시장의 책무로 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제2장 마이스산업 육성은 안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부터 안 제14조(국제협력)까지 구성되어 있음.

안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국내·외 여건 및 전망,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전문인력의 양성, 시설 확충방안 등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 외에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바, 중장기, 단기 계획을 모두 수립하는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전년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을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 마이스산업에 대한 연구조사, 마이스행사 유치·발굴 또는 개최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지원 등 수행 사업을 나열하고 있음.

안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임.

다만 단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정안	수정안
<p>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u>제5조에 의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u></p>	<p>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u>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안 제8조(마이스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서울소재 마이스기업의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마이스기업의 경영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안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은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인턴십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마이스 개최 지원)**과 **안 제12조(서울마이스기업 관련 단체 지원)**은 서울 마이스 기업간 협업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마이스 얼라이언스 운영 및 지원에 근거가 되는 조항임.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는 서울시 주도로 설립된 마이스기업 협의체로 서울 마이스 육성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원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제3장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는 안 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부터 안 제19조(시행규칙)까지 구성되어있음.

마이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와 관련하여 안 제16조(육성위원회 구성), 안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18조(위원회의 운영)를 규정함.

다만 안 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에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수정안
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4항(생략)	1~4항(현행과 같음)
5. 시에서 <u>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전담기구의 마이스 업무에 관한 사항</u>	5.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종합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 유치 촉진 및 개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기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